

# 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212
----------	-----

제출년월일 : 2020. 3.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청소년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올바른 여가활동을 통한 정서 함양으로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평창군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건전한 청소년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규정(안 제1조)
- 나. 청소년문화의집 명칭 및 위치(안 제3조)
- 다. 청소년문화의집 기능(안 제5조)
- 라.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안 제7조~제11조)
- 마.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8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나. 예산조치 : 2020년 예산에 197,323천원 반영.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19 .11. 2. ~ 2019.11 .2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기획담당관-3588(2019.11.22)원안동의-부패유발  
요인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주민복지과-15596(2019.11.15.)검토의견 반영  
완료.

## 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함은 청소년들이 일상 생활권에서 여가 및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 규정한 단체를 말한다.
4. “운영자”라 함은 평창군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청소년단체가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
5. “이용료”라 함은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이용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이하 “청소년문화의집”이

라 한다)은 강원도 평창군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은 평창군 평창읍 평창중앙로 67(평창읍)에 둔다.
2. 진부 청소년문화의집은 평창군 진부면 석두산2길 7(진부면)에 둔다.

**제4조(시설)** 청소년문화의집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체험공간 : 다목적홀, 인터넷부스 등
2. 문화창작공간 : 음악활동실, 동아리실 등
3. 문화생활공간 : 열린자료실, 카페테리아 등
4. 서비스지원공간 : 상담실, 사무실 등
5. 그 밖의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합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기능)** 청소년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개발 운영
3. 청소년 수련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4. 청소년 교류 및 친선 도모를 위한 사업
5.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를 위한 편의제공
6.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관리 운영
7.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 ① 군수는 청소년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

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제5조의 청소년문화의집 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7조(운영)** 군수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① 제7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과 기준절차는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청소년육성 보호 사업에 관한 사명감과 의욕, 지역사회공익 기여도, 사업 경험 및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 신청서에는 시설 운영의 성인지성 제고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심신수련 및 청소년 건전 육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 재산에 대해서는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청소년문화의집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청소년문화의집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구조 및 시설물을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조치 또는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3.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의 군수가 공익상 위탁운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 및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휴관일)** ① 청소년문화의집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2. 매주 월요일
  3. 시설물 안전점검이나 개·보수 등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때
-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문화의집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대상)** ①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이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이용대상 이외의 자는 청소년단체 또는 청소년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할 수 있다.

**제14조(이용허가)** ①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용 허가는 접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하며, 이용 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 일정을 조정하거나 사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행사
2.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행사
3. 그 밖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행사 및 창작활동 등

**제15조(이용료 등)** ① 평창군에 거주하는 청소년(청소년단체 포함)과 일반인은 무료로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전액감면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청소년 : 전액감면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족 중 청소년 : 전액감면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 : 전액감면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 전액감면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협찬하는 행사 : 반액감면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이용료 반환)** ①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징수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반환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청소년문화의집의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이용 허가를 받은 자가 이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이용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7조(이용자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이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청소년 건전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
2. 시설, 기물 등을 파괴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3.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
4. 이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제18조(손해배상책임)** 수탁자 또는 시설 이용자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평창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이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평창군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이용료

이용시설	단위	평일	토요일,공휴일	비고
대강당	1일	150,000원	180,000원	※이용시간 - 1일(8시간) - 오전, 오후, 야간(4시간)
	오전	80,000원	96,000원	
	오후	80,000원	96,000원	
	야간	100,000원	120,000원	
활동실	1일	80,000원	96,000원	※활동실(대강당 외 음악실 등 각종 활동실)
	오전	40,000원	48,000원	
	오후	40,000원	48,000원	
	야간	50,000원	60,000원	

**※ 비고**

- 청소년에게 우선권이 부여되므로 일반인은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보며, 1시간이 초과될 때마다 이용료의 20%을 가산한다.

**※ 이용료의 면제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 전액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청소년 : 전액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족 중 청소년 : 전액감면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 : 전액감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협찬하는 행사 : 반액감면
-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 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 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 사유서

## 비용추계서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청소년문화의집 인력배치(청소년지도사 및 청사관리원)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일반수용비 및 프로그램운영비)

○ 관련조문

- 제7조(운영) 군수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청소년문화의 집 2개소(평창군·진부)인력배치  
청소년지도사 4명, 청사관리원1명
-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일반수용비 및 프로그램운영비)

나. 추계 결과

구 분	비용산출	소요액(천원)	비 고
인건비	청소년지도사 4명 청사관리원 1명	140,353	2개소
운영비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27,000	2개소
프로그램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	30,000	2개소
계		197,353	

다. 재원조달 방안

- 군 자체수입(지방세수입)
- 청소년 지도사 2명 인력운영비 국비보조(50%)

###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주민복지과장 고흥재
연락처	(033) 330 - 2187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 입		800	1,200	1,600	2,000	2,400	8,000
시설이용료		800	1,200	1,600	2,000	2,400	8,000
<b>세 출</b>		197,353	209,339	217,706	226,441	235,563	1,086,402
인력운영비		140,353	147,339	154,706	162,441	170,563	775,402
운영비(일반,공공)		27,000	27,000	28,000	29,000	30,000	141,000
프로그램운영비		30,000	35,000	35,000	35,000	35,000	170,000
<b>재원 조달</b>		197,353	209,339	217,706	226,441	235,563	1,086,402
의존 재원	소 계	26,370	27,688	29,000	30,450	31,972	145,480
	보조금	26,370	27,688	29,000	30,450	31,972	145,48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70,983	181,651	188,706	195,991	203,591	940,922
	지방세	170,183	180,451	187,106	193,991	201,191	932,922
	세외수입	800	1,200	1,600	2,000	2,400	8,0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210mm×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 (재활용품)]